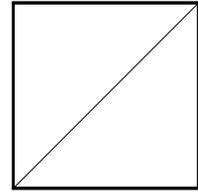


공개



의안번호	제 110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5. 31. (제 10 차)

의  
결  
사  
향

(주)휴먼엔 등 3개사 주식 등에 대한  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소 영
제출 연월일	2022. 5. 31.

## 1. 의결주문

(주)휴먼엔 등 3개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코스닥 상장법인 (주)휴먼엔 등 3개사 주식 등에 대한 지분공시 위반 조사 결과 발견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- 과징금 :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[최대주주] 900,000원
- 과징금 : ☆☆☆☆☆☆☆(주) [금융회사] 72,766원
- 과징금 : ◎◎◎◎◎◎◎ [금융회사] 22,198원

## 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 붙임 1 >
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·제4항, 제429조 제4항

나.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 붙임 2 >

다. ☆☆☆☆☆☆☆(주)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 붙임 3 >

라. ○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 붙임 4 >



- '21.5.4. 위 담보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수를 변경(2,259,887주, 12.60%) 하는 내용의 '부속계약'이 체결됨에 따라 대량보유(변경) 보고의무가 발생 하였으나, '21.8.6. 대량보유(신규) 보고서 누락하였음

(별지2)

**(주)프로이천 주식 등에 대한  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**  
=====

증권선물위원회는 ☆☆☆☆☆(주)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☆☆☆☆☆(주)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72,766원을 부과한다.

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☆☆☆☆☆(주) [금융회사]

- 사업자등록번호 : \*\*\*-\*\*-\*\*\*\*\*

- 주소 : ●●●● ●●●● ●●●●●● ●●

조치이유

**【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】**

○ ☆☆☆☆☆(주)는 2019.5.31. (주)프로이천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으로 1,000,000주(22.32%)에 대한 대량보유(신규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보고기한(2019. 6. 10.)이 지난 2019. 7. 30.에 지연보고하였음

(별지3)

**(주)카이노스메드 주식 등에 대한  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**  
=====

증권선물위원회는 ○○○○○○○○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○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22,198원을 부과한다.

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- ○○○○○○○○ [금융회사]
  - 사업자등록번호 : \*\*\*-\*\*-\*\*\*\*\*
  - 주소 :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

조치이유

**【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】**

- ○○○○○○○○은 2019.4.1. (주)카이노스메드의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(신규) 보고의무가 발생(350,000주, 6.48%)하였으나, 보고기한(2019. 4. 8.)이 지난 2019. 10. 25. 지연보고하였음

## 관 계 법 규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147조(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)**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(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을 대량보유(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이내에 그 보유상황, 보유 목적(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),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(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(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,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~ ③(생략)

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** ① ~ ③(생략)

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)의 10

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47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

<붙임 2>

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I. 산정원칙

-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총액의 10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]

II. 산정결과

- 과징금 부과결정액 : 900,000원

(단위 :원)

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	900,000

☆☆☆☆☆☆(주)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I. 산정원칙

-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총액의 10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]

II. 산정결과

- 과징금 부과결정액 : 72,766원

(단위 :원)

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	72,766원

○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I. 산정원칙

-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총액의 10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]

II. 산정결과

- 과징금 부과결정액 : 22,198원

(단위 :원)

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	22,198원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조사단	기업공시국
연 락 처	02-2100-2518	02-3145-8479